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17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4년 정부의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미달성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강력한 요구로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2016년(50%), 2017년(45%), 2018년(40%)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 2018년의 경우 하수도 일반 사용료 누진율 불합리한 부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2018년의 경우 하수도 일반 사용료 누진율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므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재검토(전문기관에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연구 용역 중)후 관련 조례 개정시까지
- 별표1의 2018년 사용료 인상은 유예하고, 2018년도분 사용료 적용은 2017년분 요율표를 적용하는 부칙 조항(적용례)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2. ~ 1. 17.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2018년 하수도 일반 사용료 누진율 불합리한 부분 개정이 필요하므로, 하수도 사용료 재검토 후 관련 조례 개정시까지 별표1의 2018년도분 사용료 인상은 유예하고, 2018년도분 사용료 적용은 2017년도분 요율표를 적용한다.